NEW YORK STATE |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ADD 서비스 이용 자격요건

중요 안내 – 2026년 2월

(2021년 12월 버전 대체)

OPWDD는 발달장애 지역사무국(DDRO)을 통해 개인이 발달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OPWDD 지원 서비스 이용 자격을 결정합니다. 본 안내문은 3단계 자격 결정 절차를 설명하고, 발달장애 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OPWDD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유형을 안내합니다.

참고사항: 발달장애로 판정되더라도 *모든* OPWDD 지원 서비스의 이용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OPWDD 지원 서비스는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격 결정 절차

자격 신청

발달장애 자격 판정을 위해 DDRO에 제출하는 모든 신청서에는 ***발달장애 판정 신청서(https://opwdd.ny.gov/transmittal-determination-developmental-disability)***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본 안내문 2페이지에 기재된 **필수 제출 서류**도 자격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관련 정보는 OPWDD의 Front Door를 통해 제공됩니다. Front Door 연락처 목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opwdd.ny.gov/contact-us. **OPWDD 자격 절차는 Front Door에 연락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3단계 심사 절차

자격을 결정하는 절차는 여러 단계의 심사를 포함할 수 있으며, 모든 개인이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단계 심사

1단계에서는 DDRO 직원이 자격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출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차 검토가 완료되면, DDRO는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a) (a) 자격 또는 임시 자격(Provisional Eligibility)이 확인되었음

(b) (b) 신청서가 미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함

(c) (c) 신청이 2단계 심사로 회부됨

2단계 심사

자격 신청이 2단계 심사로 회부되는 경우, DDRO 소속 임상의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해당 신청을 평가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위원회가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DDRO가 해당 자료를 접수해야 하는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2단계 심사가 완료되면, DDRO는 해당 개인에게 자격 결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위원회가 발달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OPWDD 서비스 이용 *자격이 없습니다.* 서면 통지서에는 결정 사유가 명시되며, 다음과 같은 선택 사항이 안내됩니다:

(a) DDRO 직원과 면담하여 결정 내용 및 검토된 자료에 대해 논의하기

(b) 3단계 심사 요청하기

(c) 메디케이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메디케이드 공정심의(Fair Hearing) 요청하기

신청자는 위 선택 사항 중 하나 또는 전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정심의를 요청할 경우, 3단계 심사는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참고사항: **발달장애 판정 신청서**에서 메디케이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만, 공정심의 안내가 포함된 결정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3단계 심사

3단계 심사는 1단계 및 2단계 심사에 관여하지 않은 면허 소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자격심사위원회(Eligibility Review Committee)가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자격 신청을 검토한 후 DDRO 2단계 심사 조정자에게 권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3단계 권고 사항은 DDRO 책임자(또는 지정인)가 검토하며, DDRO 결정의 변경 여부를 포함한 결과가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3단계 심사는 공정심의 예정일 이전에 완료됩니다.

자격 결정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DDRO는 개인이 OPWDD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특정 정보를 요구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OPWDD 자격 지침의 부록 A "신청 체크리스트" 참조: https://opwdd.ny.gov/regulations-guidance/adm-2023-02-opwdd-eligibility-determination-process):

- 지적 기능 평가("IQ 검사")를 포함한 심리평가 보고서. 이 보고서는 전체 점수(Full Scale), 지표 점수(Index), 부분 점수(Part), 하위검사 점수(Subtest)를 모두 포함해야 함
- 표준화된 종합 적응행동 평가에 대한 해석 보고서 (축약형 또는 "영역" 수준 평가가 아닌 종합 평가여야 하며, 요약 점수, 종합 점수, 척도 점수, 영역 점수를 포함해야 함)
- 지적장애 외의 진단인 경우, 진단을 뒷받침하는 건강 상태 및 진단 소견을 포함한 의료 또는 전문의 보고서
- 신체·의료 요약서 (최근 12개월 이내 작성된 일반 건강 진단 보고서)
- 22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사회·발달 이력, 심리사회 보고서 또는 기타 관련 보고서 (다른 보고서에 이미 포함된 경우 제외)
- 사회적 평가서 (https://opwdd.ny.gov/adm-2020-04-social-evaluation-requirements-initial-level-care-eligibility-0)

경우에 따라 DDRO는 자격 판단을 위해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이나 추가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거나 직접 평가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지적 기능 및 적응행동 평가 도구*

참고사항: 최신 또는 갱신된 지적 기능·적응 기능 평가는 해당 표준화 검사 도구의 최신 판에 근거하여 실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지적 기능(지능) 평가 도구가 인정됩니다:

- 웩슬러 지능검사 시리즈(The Wechsler Series of Intelligence Scales)
- 스탠퍼드-비네 지능검사(Stanford-Binet Scales)
-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Leiter International Performance Scale)
- 카우프만 지능검사 시리즈(Kaufman Series of Intelligence Scales)

*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라도, 포괄적이고 구조화된 표준화 검사이며 최근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마련된 최신 규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종합 지능검사의 일부 실시 또는 단축 실시는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축약형 지능검사(WASI, K-BIT)는 지적 기능을 평가하는 단독 기준 검사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청각장애가 있거나, 비언어적인 개인의 경우, 비언어 검사(Leiter, CTONI)와 종합 IQ 검사의 수행(Performance) 항목을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가 고려됩니다.
- 영어로 표준화된 지능검사는 자격 판정을 위한 심사에 사용할 경우, 다른 언어로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실시되는 평가에서는 다음의 적응행동 평가 도구가 인정됩니다:

- 적응행동평가시스템(Adaptive Behavior Assessment System)
- 비넬랜드 적응행동척도(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종합 수준만 해당)
- 독립행동척도(Scales of Independent Behavior) 중 운동기능 영역(Motor Skills Domain)*만 해당*
- 위 목록에 없는 검사라도, 22세 이전에 실시된 경우에는 발달기 동안의 적응행동 결함 이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응행동 평가 점수는 개인의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행동을 반영해야 하며,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최상의 수행이나 타인의 지원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행동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적응행동 평가는 해당 검사 사용에 대해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각 검사 매뉴얼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